

## 해외취업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2017.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해외취업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경동대학교 해외취업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본원은 글로벌캠퍼스에 두며, 글로벌캠퍼스를 제외한 각 캠퍼스에는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① 해외 취업 지원계획 수립
- ② 해외 취업처 개발 및 관리
- ③ 해외 취업 홍보
- ④ 해외 취업 및 인턴십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⑥ 해외 취업 희망자 상담 및 추천
- ⑦ 해외 취업자 수속 및 사후 관리
- ⑧ 내국인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 ⑨ 기타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된 활동

제4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과 운영위원 및 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지원단장은 교원(초빙교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직원(계약직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지원단을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운영위원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국가별 해외취업전담교수의 배정) ① 지원단장은 해외취업에 경험이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원 또는 해외취업에 필요한 직무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교원을 국가별 해외취업전담교수로 지정하여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별 해외취업전담교수로 지정된 교원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지원단 소속으로 본다.

제6조(전문가 연계 및 자문) ① 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기관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해외취업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연구원의 자격) 지원단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어야 한다.

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기관
2.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취업 주관부서
3. 기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인정한 국외 소재 해외취업 유관기관

제8조(운영위원회) ①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원단장이 되며, 위원은 지원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 중 일부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지원단장은 연구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9조(정보관리) 지원단으로 제공한 학생 개인정보와 취업상담 기록은 3년간 보관하고 이후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요청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수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